

서울시 주민자치회 예산삭감 반대 및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1. 청원자 및 제안경과

- 청 원 자 : 정춘근(서림동 주민자치회장) 외 238명
- 소개의원 : 서윤기, 송도호, 유정희, 임만균 의원
- 제 출 일 : 2021년 11월 4일
- 회 부 일 : 2021년 11월 9일

2. 청원요지

-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사업 방침(2021.4.6.)에 근거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2022년의 동단위 자치계획을 수립,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고하였으나, 서울시의 전면적이고 일방적인 예산 삭감 조치로 인해 주민자치계획의 무산을 넘어 주민자치 제도와 정책이 전면 후퇴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바, 주민자치회 예산의 편성과 함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청원함.

3. 소개의원 청원소개 요지

- 청원인 외 238인은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방침(2021.4.6.)에 근거해 주민총회를 거쳐 2022년 동단위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총회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고했으나,

서울시의 전면적이고 일방적인 예산 삭감 조치로 인해 주민자치 계획의 무산을 넘어 주민자치 제도와 정책이 전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음.

-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예산의 전면적이고 일방적인 삭감 조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주민자치와 시민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이므로 즉각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제출의견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할지를 고민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자치회 발전방안과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제출의견 :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구 사업을 과도하게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고
 - 2021년 주민자치회 사업의 자치구 평균 실적행률도 30% 정도로 저조하여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사업의 조정이 필요함.

5. 검토의견

가. 청원 및 청원소개의 개요

- 청원인 외 238명이 제출한 동 청원은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사업 방침('21.4.6.)에 근거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2022년의 동단위 자치계획을 수립,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고 하였으나, 서울시의 전면적이고 일방적인 예산 삭감 조치로 인해 주민자치계획의 무산을 넘어 주민자치 제도와 정책이 전면 후퇴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바, 계획된 주민자치회 예산의 편성과 함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청원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21년 4월 6일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계획」을 통보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2022년 동단위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총회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고했으나,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을 감액하여 제출하고 있음.

[연도별 지원 계획(안)]

(단위: 개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원동(지원액)	26(10)	80(35)	136(54)	236(89)	316(120)	425(161)

※ 세입결산 동별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을 기준으로 사업 규모를 산정하나, 예산 확정안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2021년 주민세(개인균등)징수분 환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사업 계획(시민협력국 제출)

-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예산의 전면적이고 일방적인 삭감 조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주민자치와 시민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이므로 즉각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며,

- 이에 서윤기, 송도호, 유정희, 임만균 의원은 청원 소개를 통해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예산의 전면적이고 일방적인 삭감 조치는 즉각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동 청원은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2022년도 예산 삭감 조치를 중단하고,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주민자치회의 지원 예산은 행정국과 시민협력국에 분리되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나. '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 개요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지역내 주요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해결하며, 각종 문화·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스스로 구성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와 참여 욕구에 부응하고자 운영되는 사업임.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 바,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설치요건은 마련되어 있다고 하겠음.

□ '서울형 주민자치회' 추진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29조
 - 주민자치회 설치(동단위), 기능(주민화합, 위탁 사무 처리 등), 구성(조례로 정함)
- '17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 추진계획('17.2, 행정자치부)
 - 시범실시를 통한 성공모델 창출, 적극적 주민참여, 생활자치 구현 등
-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17.2. 서울시)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환, 대표성 강화, 자치권한 부여,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 **자치구 조례표준안 제정('17.10) 및 개정('20.7)**
- 공개모집, 개방성 및 다양성, 자치위원 역량강화, 탄력적 회의 운영
- **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7)**
- 주민자치회 활성화, 자치회관 운영, 자율성·다양성 보장, 시장의 책무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지원과 자치회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3.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회관 시설 및 환경 개선
 2. 자치회관에 대한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3. 자치회관 도농교류 활성화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2017년 11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1년 22개 자치구 236개동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음.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현황

- '17.11월 : 최초 4개구 26개동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시작
 - 성동구(8개동), 성북구(2개동), 도봉구(6개동), 금천구(10개동)
 - '18.1월 ~ '20.12월 : 18개구 210개동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확대
 - (전동시행) 10개구 : 성동, 성북, 도봉, 금천, 동대문, 노원, 은평, 서대문, 강서, 동작
 - (확대 중) 12개구 : 종로, 미포, 양천, 관악, 강동, 용산, 광진, 중랑, 강북, 구로, 영등포, 송파
 - '21.4월 기준 : 총 22개구 236개동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중
 - (미시행) 중구, 서초, 강남 → 주민자치회 구 조례 제정 후 시행 예정
 -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 동단위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50인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
 - 위원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2명, 간사 1명 등 선출
- ※ 자치구 조례별 규정내용 상이함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시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인 서울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구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인 주민자치산업단과 동자치지원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2022년 예산안 현황

- '서울형 주민자치회' 예산은 행정국과 시민협력국 예산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음.

1) 행정국 소관 예산(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은 자치회관 자율운영과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0억 8천 9백만원 (63.4%)을 감액하여 52억 4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4,336,648	14,336,648	5,246,751	△9,089,897	△63.4
사무관리비	32,646	32,646	32,646	0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3,034,252	13,034,252	4,474,355	△8,559,897	△66
자치단체 자본보조	1,269,750	1,269,750	739,750	△530,000	△42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회관 평가위원 수당 150,000원*8명*4회 = 4,800천원 ○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관련 회의 및 자료인쇄비 등 = 27,846천원 - 자치구 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 200,000원*2회*12월 = 4,8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회관 평가위원 수당 150,000원*8명*4회 = 4,800천원 ○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관련 회의 및 자료인쇄비 등 = 27,846천원 - 자치구 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 200,000원*2회*12월 = 4,800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보고서 및 우수사례 등 제작 = 23,046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보고서 및 우수사례 등 제작 = 23,046천원
	증감사유	
	변동 없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회관 평가결과 운영비 지원 18,480,000원*25개구 = 46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회관 평가결과 운영비 지원 18,480,000원*25개구 = 462,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지원 = 12,257,152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자치구(4개구, 35개동) = 1,895,120천원 - 2단계 자치구(11개구, 96개동) = 6,583,930천원 - 3단계 자치구(7개구, 82개동) = 3,134,273천원 - 4단계 자치구(2개구, 3개동) = 463,829천원 ○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지원 = 65,1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교류 자치회관 900,000원*47개소 = 42,300천원 - 기존 우수 자치회관 400,000원*57개소 = 22,800천원 ○ 주민자치회-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추진 50,000,000원*5개동 = 25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지원 = 4,012,35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자치구(2개구, 15개동) = 480,873천원 - 2단계 자치구(11개구, 85개동) = 3,034,051천원 - 3단계 자치구(7개구) = 497,431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완료로 예산지원대상 감소('21년 자치구사업단 24개구, 동주민자치회 216개동 → '22년 자치구사업단 20개구, 동주민자치회 100개동) 등 -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지원) 동주민자치회 사업비 등 활용하여 추진가능한 예산으로 '22년 감액 - (주민자치회 자치회관 위수탁 시범운영) '21년 단년도 시범사업 추진완료 		
자치단체자본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회관 평가결과 시설비 지원 29,590,000원*25개구 = 739,7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회관 평가결과 시설비 지원 29,590,000원*25개구 = 739,7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지원 10,000,000원*53개동 = 530,000천원 	
	증감사유	
-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22년 신규확대동 공간조성비 미지원		

- 다만, 동 사업 중 자치구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사업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급격히 감액(2021년 122억 5천 7백만원→2022년 40억 1천 2백만원)됨에 따라 원활한 주민자치회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여부와 향후 사업 계속성에 대한 자치구의 우려를 해소할 명확한 계획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2년 주민자치회 관련 세부 산출내역]

구분	'21	'22
소 계	12,787백만원*	4,012백만원
자치구사업단	9,221백만원	3,112백만원
	8,111백만원	2,612백만원
인건비	· 단장3명, 단원 14명, 자치지원관 34명 × 월단가 × 6개월 · 단장 20명, 30명, 자치지원관 118명 × 월단가 × 12개월	· 단장 20명, 단원 30명, 자치지원관 73명 × 월단가 × 6개월
운영비 사업비	1,110백만원 · 2개구 × 50백만원 × 1/2(6개월) · 20개구 × 50백만원 · 2개구(강남, 서초) × 30백만원	500백만원 · 20개구 × 50백만원 × 1/2(6개월)
동주민자치회	3,273백만원	900백만원
	1,810백만원	600백만원
사업비	· (3년차) 55개동 × 6백만원 · (2년차) 100개동 × 12백만원 · (1년차) 56개동 × 5백만원	· (3년차) 100개동 × 6백만원
간사활동비	933백만원 · 111명 × 월500천원 × 6개월 · 100명 × 월500천원 × 12개월	300백만원 · 100명 × 월500천원 × 6개월
신규시행동 자산취득비	530백만원 · 53개동 × 10백만원	-

- 또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관련 인건비를 6개월분에 대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있는 바, 주민자치회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연착륙을 위해 기간 연장과 예산 증액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22년 주민자치활성화 시범사업 인건비 세부 산출기준 및 내역]

(단위 : 명, 천원)

단계	자치구	단장		단원		동 자치지원관	
		편성 인원	인건비 (6개월간)	편성 인원	인건비 (6개월간)	편성 인원	인건비 (6개월간)
1단계	소계	2	51,373	4	81,500	8	163,000
	성북	1	25,687	2	40,750	5	101,875
	도봉	1	25,687	2	40,750	3	61,125
2단계	소계	11	282,552	19	387,125	65	1,324,375
	종로	1	25,687	1	20,375		
	동대문	1	25,687	2	40,750	7	142,625
	노원	1	25,687	2	40,750	10	203,750
	은평	1	25,687	2	40,750	8	163,000
	서대문	1	25,687	2	40,750	7	142,625
	마포	1	25,687	1	20,375		
	양천	1	25,687	2	40,750	6	122,250
	강서	1	25,687	2	40,750	10	203,750
	동작	1	25,687	2	40,750	8	163,000
	관악	1	25,687	1	20,375		
	강동	1	25,687	2	40,750	9	183,375
3단계	소계	7	179,809	7	142,625		
	용산	1	25,687	1	20,375		
	광진	1	25,687	1	20,375		
	중랑	1	25,687	1	20,375		
	강북	1	25,687	1	20,375		
	구로	1	25,687	1	20,375		
	영등포	1	25,687	1	20,375		
	송파	1	25,687	1	20,375		
소 계		20	513,730	30	611,250	73	1,487,375

단 계	구 분		세부내역
1단계	자치구 사업단	2개구	성북, 도봉
	동 주민자치회	2개구 15개동	성북(10), 도봉(5)
2단계	자치구 사업단	11개구	종로, 동대문,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동작, 관악, 강동
	동 주민자치회	8개구 85개동	동대문(9), 노원(13), 은평(11), 서대문(9), 양천(6), 강서(15), 동작(10), 강동(12)
3단계	자치구 사업단	7개구	용산, 광진, 중랑, 강북, 구로, 영등포, 송파
	동 주민자치회	-	-

2) 시민협력국 소관 예산(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은 주민세 징수분을 지역으로 환원,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여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6천 5백만원 (6.9%)을 감액하여 50억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5,368,796	5,368,796	5,003,229	△365,567	△6.9
사무관리비	7,000	7,000	7,000	0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95,308	5,095,308	4,785,196	△310,112	△6
자치단체 자본보조	266,488	266,488	211,033	△55,455	△21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4,000,000원 = 4,000천원 ○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담당자 교육, 매뉴얼 제작 등 사업 운영 3,000,000원 = 3,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4,000,000원 = 4,000천원 ○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담당자 교육, 매뉴얼 제작 등 사업 운영 3,000,000원 = 3,000천원
	증감사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 5,095,308천원 - 1단계 4개구 46개동 1,559,021,000원 = 1,559,021천원 - 2단계 11개구 55개동 2,258,853,000원 = 2,258,853천원 - 3단계 7개구 35개동 1,277,434,000원 = 1,277,434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 4,527,096천원 - 1단계 4개구 61개동 1,285,196,000원 = 1,285,196천원 - 2단계 11개구 138개동 2,541,900,000원 = 2,541,900천원 - 3단계 7개구 35개동 700,000,000원 = 700,000천원 ○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주민자치회 미시행 15개동) = 258,100천원 - 주민자치회 미시행 7개구 15개동 258,100,000원 = 258,100천원
	증감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년도 실제 집행률(50%) 수준으로 예산액 삭감 - 22개구 136개동(21년) → 22개구 234개동(22년) ○ (동단위 계획형-주민자치회 통합) 주민자치회 미시행동 15개동에 대한 사업실행비 추가 반영 - 자율형동, 7개구 15개동(258,100천원) 	
자치단체자본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 266,488천원 - 1단계 4개구 46개동 121,568,000원 = 121,568천원 - 2단계 11개구 55개동 111,520,000원 = 111,52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 192,533천원 - 1단계 4개구 61개동 50,059,000원 = 50,059천원 - 2단계 11개구 138개동 113,594,000원 = 113,594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 3단계 7개구 35개동 33,400,000원 = 33,400천원	- 3단계 7개구 35개동 28,880,000원 = 28,880천원 ○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주민자치회 미시행1개동) = 18,500천원 - 주민자치회 미시행 1개동 18,500,000원 = 18,500천원
	증감사유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자치구 실집행률이 낮아 '20년도 실제 집행률(50%) 수준으로 편성 - 22개구 136개동(21년) → 22개구 234개동(22년) ○ (동단위 계획형-주민자치회 통합) 주민자치회 미시행 1개동 사업실행비 추가 반영 - 자율형동, 구로구 오류2동(18,500천원)	

- 동 사업 예산은 주민자치회 지원 대상을 전년도 22개구 136개동에서 2022년 22개구 234개동으로 확대하는 반면, 각 자치회 지원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자치구의 낮은 실집행률을 이유로 2020년도 실제 집행률 수준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 한편, 시민협력국에서는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인 '동단위계획형 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3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2년 예산편성 안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시비 지원을 중단하여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주민자치회 미시행동인 7개구 15개동에 대한 사업실행비만 편성하여 전년 대비 92.7% 감액(35억 1백만원)한 2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사무관리비		○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4,000,000원 = 4,000천원	○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4,000,000원 = 4,000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지원사업 운영 = 10,000천원 -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2,000,000원 = 2,000천원 - 책자 제작 8,000,000원 = 8,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담당자 교육, 매뉴얼 제작 등 사업 운영 3,000,000원 = 3,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담당자 교육, 매뉴얼 제작 등 사업 운영 3,000,000원 = 3,000천원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단위 계획형 사업 지원 3,496,399,000원 = 3,496,399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 5,095,308천원 - 1단계 4개구 46개동 1,559,021,000원 = 1,559,021천원 - 2단계 11개구 55개동 2,258,853,000원 = 2,258,853천원 - 3단계 7개구 35개동 1,277,434,000원 = 1,277,434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 4,527,096천원 - 1단계 4개구 61개동 1,285,196,000원 = 1,285,196천원 - 2단계 11개구 138개동 2,541,900,000원 = 2,541,900천원 - 3단계 7개구 35개동 700,000,000원 = 700,000천원 ○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주민자치회 미시행 15개동) = 258,100천원 - 주민자치회 미시행 7개구 15개동 258,100,000원 = 258,100천원
자치단체자 본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 266,488천원 - 1단계 4개구 46개동 121,568,000원 = 121,568천원 - 2단계 11개구 55개동 111,520,000원 = 111,520천원 - 3단계 7개구 35개동 33,400,000원 = 33,4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 지원 = 192,533천원 - 1단계 4개구 61개동 50,059,000원 = 50,059천원 - 2단계 11개구 138개동 113,594,000원 = 113,594천원 - 3단계 7개구 35개동 28,880,000원 = 28,880천원

과목구분	2021년 본예산		2022년 예산(안)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 동단위계획형 사업 지원 271,220,000원 = 271,220천원		○ 동단위 계획형 지원사업(주민자치회 미시행1개동) = 18,500천원 - 주민자치회 미시행 1개동 18,500,000원 = 18,500천원

- 시민협력국은 이미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의제 및 보조금 신청액을
확정한 234개동의 신청예산에서 50%에 해당하는 예산만을 편성
하였는 바, 주민들이 서울시 주민자치활동계획에 따라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개발했던 사업들이 자칫 무력화·백지화될 우려와
각 자치구의 부담분에 따라 주민자치회 예산에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여
자치구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종합의견

- ‘서울형 주민자치회’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에서 3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는 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운영성과
평가와 문제점 도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예산편성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형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 2021.6.7. :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말하다
- 2021.6.25. : 서울형 주민자치회 5년 생활자치의 가능성을 열다
- 2021.9.16. : 서울형 주민자치회, 미래를 말하다

- 또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회의 제설정과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단위의 민주성을 회복하여 문제 해결가능성이 증대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자치지원관의 역할 확대 필요와 회비 납부 제도의 개선 및 과도한 인건비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등도 공존하는 바, 이를 감안한 주민자치회 운영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서울형 주민자치회’사업 5년차를 맞이하여 서울시에서는 ‘주민자치회’보조금 집행 이행실태 및 사업추진의 정상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점검에 따른 조치결과 이행여부와 보조금 집행 등 회계처리에 대한 숙지와 교육 등을 통해 부적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형 주민자치회’사업은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에서 동단위로 정책·사업·예산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바, 이를 감안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의 적정 편성과 집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